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착한 소비

따뜻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 착한 손길이 모여 미래의 희망이 되고 내일의 용기를 선물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1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본 카타로그는 친환경종지로 제작 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의 섬세한 손길과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 1666-1030
 일자리육성 일이 없으면 삶도 없다

장애인생산품 온라인쇼핑몰 에이블마켓
 www.ablemarket.or.kr





따뜻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
바로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더해지는 소비
나눔과 희망으로 따뜻해지는 소비

바로 '착한소비' 입니다.

[일할 수 있는 행복]
땀과 노력의 가치를 선물해주세요.
희망과 용기를 채워주세요.

따뜻한 사회를 위한 착한 발걸음.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꿈을 꾸고, 보고, 느끼고, 생각합니다.**

몸은 불편할지라도 꿈마저 자유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꿈을 담아, 정성을 다해 장애인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로 세상을 향한 힘찬 도전을 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합니다.

꿈으로 가득 채워 정성으로 만든 제품.

**모두의 신뢰를 통한
'착한 소비'로 차별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설

- 03 비전 미션 핵심가치
- 04 인사말
- 05 현황 및 조직도



사업분야

- 08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 09 상담사업
- 10 판로개발사업
- 11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 12 조달사업
- 13 조달사업 - 장애인생산품 전용 쇼핑몰 사업
- 14 행복플러스가게 운영
- 16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22 우선구매제도 안내
- 24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
- 27 수익계약 관련 규정 현황
-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9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의무
- 31 서울판매시설 이용가이드
- 32 관계법령 안내

서울지역 장애인생산품 소개

- 36 장애인생산품 종류

전국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현황

- 49 전국 판매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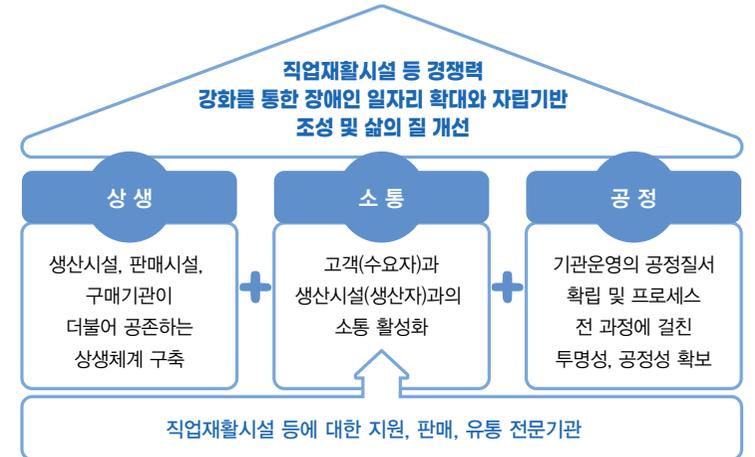
비전

장애인생산품 판매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향상에 기여한다.

미션

- 장애인생산품 판매확대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마련
- 장애인이 원하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 생산품 판로 개척
- 장애인의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생산품 판매촉진

핵심가치



기본현황

| | | | | |
|------|-------------------|-----------------------|--------------|---------------------------|
| 시설명 |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시설종류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
| 시설장 | 이 상 익 |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6045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 전화번호 | 02-2647-4100 | |
| 대표인명 | 법인명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대표자명 | 최 종 태 |
| | | | 법인등록 | 2006.08.01 (보사부 제320호)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34 2층 | 법인등록번호 | 264121-0006905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서울판매시설을 애용해 주시는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서울판매시설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소득향상에 더욱 기여하고자 합니다.

생산 - 판매 - 구매 기관 간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고객과 시설과의 활력 있는 소통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설로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 대한 경영지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품질향상,
장애인 평가센터 운영등 구매기관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안내 및 조달,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착하고 의미있는 소비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행운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장 이상익 드림

현황

시설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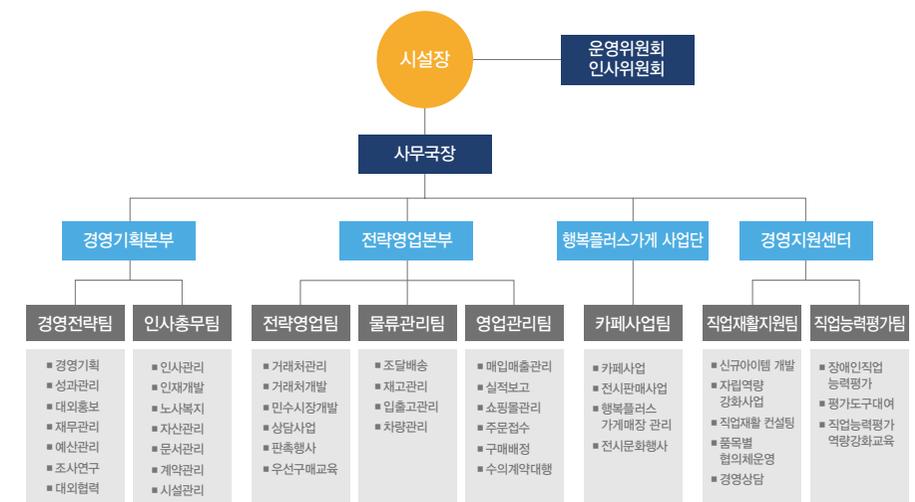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전화번호 02-2647-4100
팩스 02-2645-4540



시설규모

- 대지 1,007 m²
- 건축면적 407 m²
- 연면적 982 m²
- 구조 지상3층

조직도





에이블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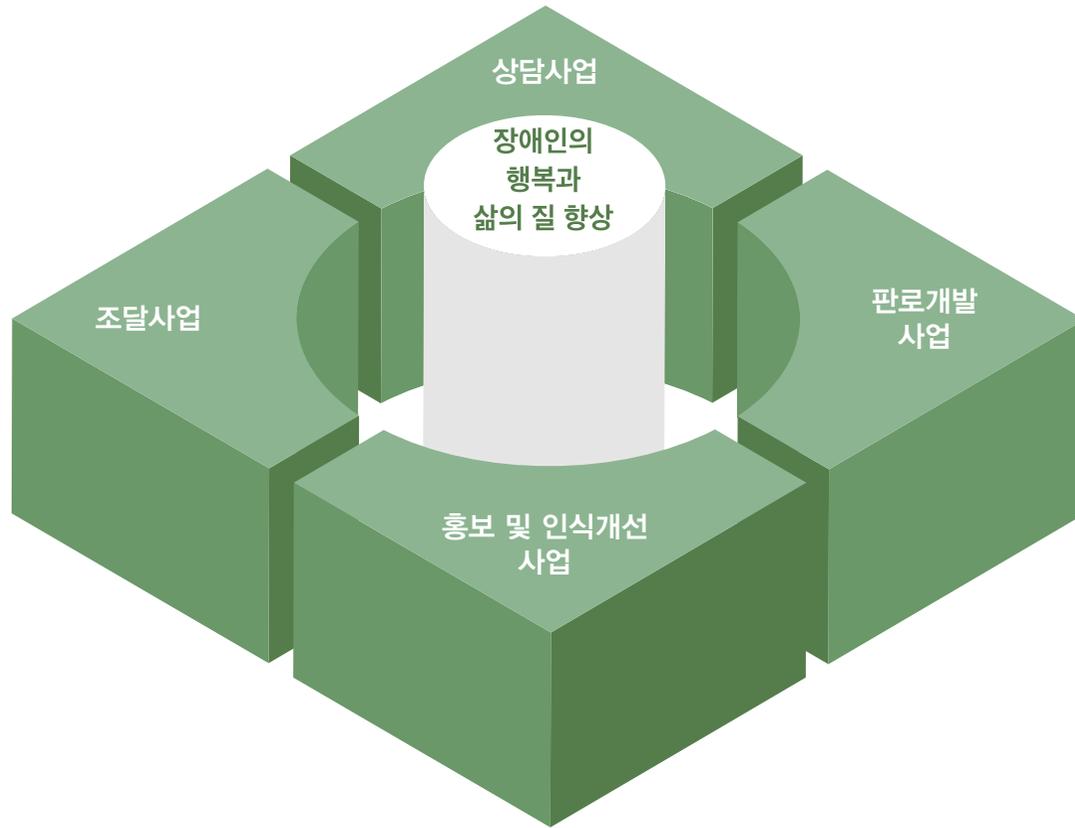
홈페이지



사업분야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생산품 관련 상담 및 지원업무와 수요처의 요구에 대응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상담사업

생산시설-판매시설-소비자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최상의 제품생산과 최고의 서비스 제공 **장애인생산품과 관련된 특성, 시장정보, 신규아이템** 등의 상담을 생산품 생산시설에 제공



제품생산지도상담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공유
수요처의 의견수렴 및 피드백, 시장정보 제공 등

제품생산관련상담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제품사양에 대한 정보 및 시장정보, 신규 아이템 제공 등

판로확보관련상담

-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마땅한 판로를 찾지 못한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방법 연구
- 수요처의 장애인생산품 구매와 관련하여 수요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수요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 샘플을 제공
- 구체적인 수요처에 대한 상담은 전화, 방문 또는 수요처의 판매시설 내방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

장애인생산품의 제품개발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시장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생산시설에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한 신규상품의 제품개발 및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산자(지역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소비자 - 판매시설 - 생산자 간의 정보공유를 통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품질 우수성 및 제품인지도**를 높입니다.

판로개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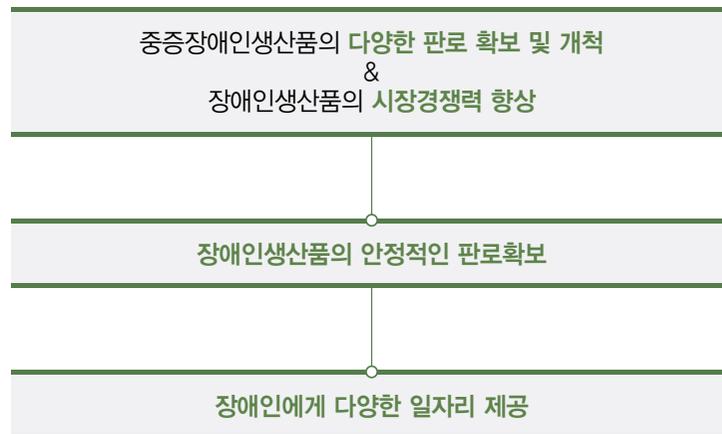
장애인생산품 수요확대를 위한
시장분석, 제품개발 등의 판로개척 업무와 마케팅 활동 수행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로확대 및 판매촉진과 기존 수요처 및 새로운 판로확보를 위하여 끊임없는 수요처 방문 및 담당자와 상담병행

- 수요처 방문 : 제품샘플 및 관련 정보 제공
-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로개척
- 일반사업자와 시설연계 추진

일반 유통시장으로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대형 할인마트 및 일반 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생산시설과 일반 업체의 연계 등을 통하여 보다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노력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과 장애인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생산품 전시,
판매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의 업무 수행

외부 홍보판촉행사

정부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기타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외부 홍보판촉행사를 개최하여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



견학 및 교육

전시장을 둘러보며 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견학 및 교육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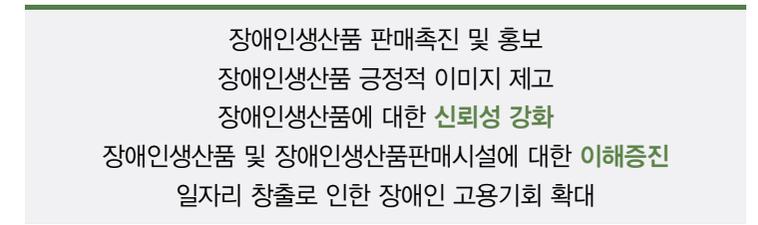
- 보건복지부 주관 교육 : 년중(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담당자 교육)
- 서울시 주관 교육 : 년중(서울시 산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대상 기관 담당자 교육)
- 학생 및 일반 단체 등 시설견학 : 수시

이용대상

수요처 기관 구매담당자 및
교육기관, 그 외 장애인 및
장애인생산품에 관심 있는 모든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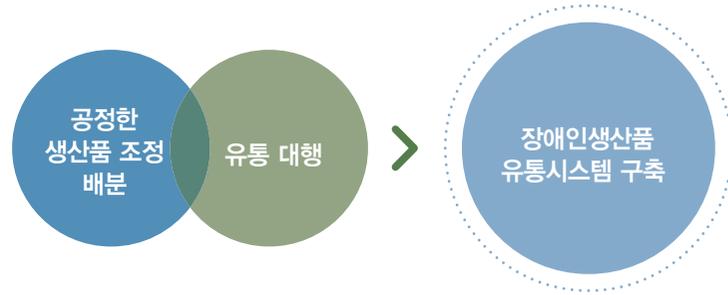
문의

1666-1030
일자리육성 일이 없으면 살도 없다



조달사업

수요처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
(입찰, 전화주문, 온라인 등)으로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지원 유통대행



공정한 생산품 조정, 배분

여러 시설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이 생산 될 경우, 지역, 근로장애인 수 등을 고려하여 생산물량 조정·배분

유통의 대행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수요처에서 구매요청한 제품을 지정한 장소까지 배송
- 효율적인 배송을 위하여, 전국 주요 17개 시도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설치·운영
- 전담 인력을 활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장애인생산품 유통 시스템 구축을 통해
장애인생산품구매에 대한 효율성 및 신뢰성을 높임

장애인생산품 전용쇼핑몰 운영(에이블마켓)

에이블마켓 www.ablemarket.or.kr

장애인생산품의 제품정보 제공 및
간편한 구매를 위하여 전용쇼핑몰 에이블마켓을 운영

에이블마켓을 통하여 600여가지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생산품의 제품 및 인증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적확인이 상시 가능(지자체)하며 장애인생산품의 매출증대 및
구매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블마켓 홈페이지



에이블마켓 검색방법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과 지역사회와 소통을 위한 복지문화공간으로 장애인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울특별시의 신개념 브랜드로, 장애인생산품 전시판매를 비롯한 커뮤니티 및 문화공간의 기능을 갖춘 멀티형 카페

정부 공공기관에 판매가 어려운 생필품이나 제빵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된 '행복플러스가게'. 목동[본점]을 비롯하여 시청역점, 공덕역점, 서울시 신청사점, 상상나라점, 대치동점 등 총 6곳의 행복플러스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따뜻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동점
양천구 목동서로 33
전화번호 02-2646-2500



| | |
|----|--|
| 1층 | 장애인생산품 전시 & 카페 행복플러스 가게 운영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
| 2층 |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 커뮤니티 공간 독립된 지역주민의 모임방(다솜, 이든, 가온누리, 씨밀레) |
| 3층 | 세미나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세미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



시청역점
중구 세종대로 지하 101
TEL_ 02-753-1556



공덕역점
마포구 마포대로 지하 100
TEL_ 02-3272-2300



서울시청점
중구 세종대로 110, 9층(하늘광장)
TEL_ 02-733-1245



서울상상나라점
광진구 능동로 216
TEL_ 02-452-1144



대치동점
강남구 도곡로 416, 1층
TEL_ 02-566-0877

※ **직업재활시설 등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대여 가능**

| 문의 |
☎ **2647-4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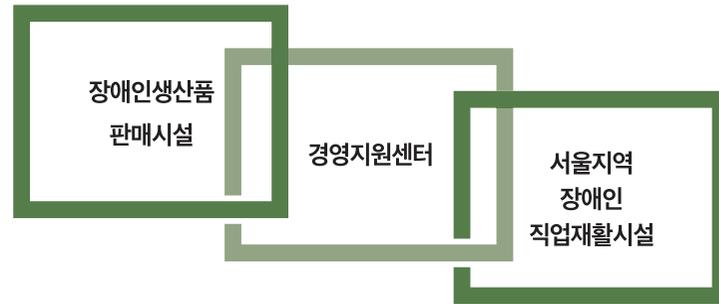
서울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경영지원 센터

TEL 02-2647-4097~8
FAX 02-2647-3999
E-mail mscenter@mscenter.or.kr

서울지역 장애인직업재활시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돕고,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지역생산품 시장경쟁력 향상 및 판매활성화 등 다양한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영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생산시설의 사업활성화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서울지역 소재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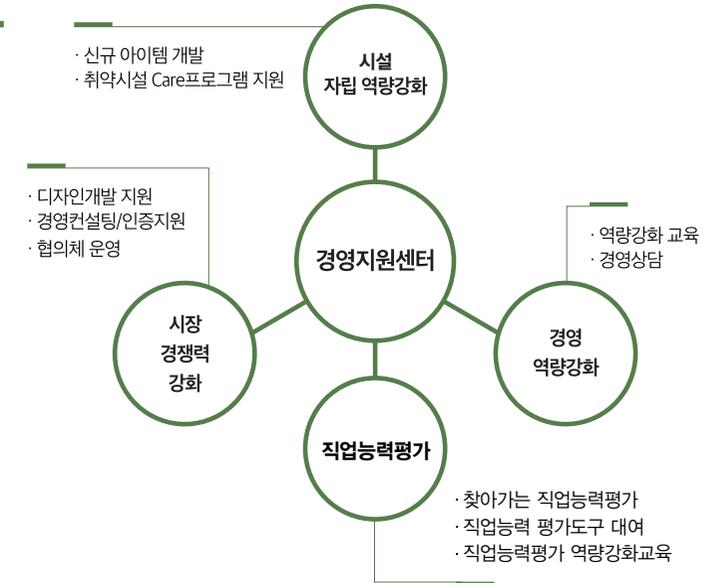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경영지원센터

- 시설 & 제품정보공유 마케팅정보공유
- 영업 & 판매지원

경영지원센터 ↔ 서울지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생산 & 판매관련 정보공유지원사업 아이디어 제공 및 욕구전달
- 경영지원사업
 - 시장경쟁력 강화
 - 시설네트워크 신규 아이템 개발 및 육성
 -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활성화 지원

경영지원센터 주요사업



서울지역 직업재활시설의 자립역량 강화
장애인생산품의 시장경쟁력 강화
직업재활시설 종사자의 경영역량 강화

시설 자립역량 강화

[신규 아이템개발]

- 장애인생산품 홍보를 통한 생산시설 자립역량 강화
- 사업타당성 검토 및 설명회 개최와 연계 활동 추진

[직업재활시설케어지원]

- 임가공업 수주 지원 및 성장기반 마련
- 취약시설 진단 및 처방, 1:1 멘토링 등 근접지원

시장 경쟁력 강화

[협의체 활성화]

- 협의체 운영을 위한 업무 지원
- 협의체별 사업화 관련 애로사항 해결 (판로확보 및 공동브랜드 등)

[디자인개발 지원]

- 시설 및 제품에 대한 BI, CI, 패키지, 홈페이지 개발 등 디자인 지원

[경영·품질 컨설팅 지원]

- 경영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한 애로사항 수집, 문제점 도출을 통한 경영애로 해소
- 장애인 생산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품질 애로 해소

경영지원센터 주요사업

경영 역량 강화

[역량강화 교육]

- 시설운영 및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전문기법 등의 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

[경영상담]

- 직업재활시설 경영애로 사항에 대한 상담창구 운영 (경영일반, 마케팅, 사업화, 정보지원 등)

직업능력평가

[찾아가는 직업능력평가]

- 이용장애인 대상 직업능력 평가지원
- 직무분석 바탕의 기관 맞춤 평가지 제작

[직업능력평가도구 대여]

- 직업능력 평가를 희망하는 기관에 평가도구 대여

[직업능력평가 역량강화교육]

- 직업능력평가 도구 활용방법에 대한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에이블마켓



홈페이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생산물품은 만드는 속도는 느리지만,
장애인 특유의 높은 집중력과
꼼꼼한 정성을 담아 만들어집니다.

우선구매 제도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지정, 장애인기업제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은 포함 되지 않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지정일자: 2012. 9. 21.)4.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등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 지원
-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에 대한 지원
- 법 제1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의계약 대행
- 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관리
-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생산품목 개발
-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및 A/S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관리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4항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 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제5항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내용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4.5.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 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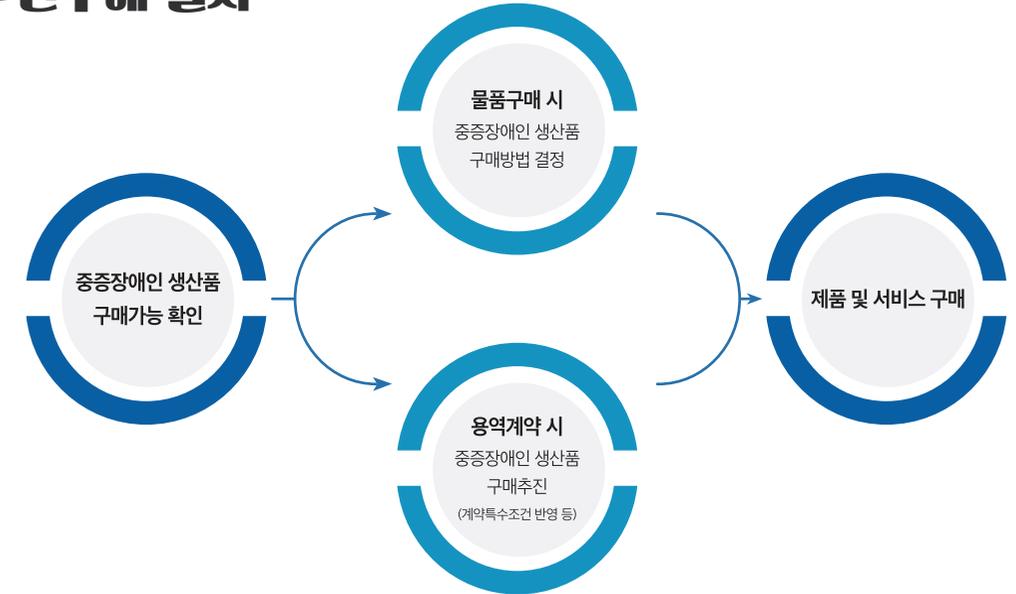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2호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 | |
|---------|--|
| 일반 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 조달청 구매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 간접 구매 |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 단체급식 위탁업체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에서 구매하는 재생토너카트리지 등 - 단체급식 위탁 : 단체급식 위탁업체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등 - 청소 및 학술용역 :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에서 구매·인쇄하는 화장지, 인쇄물 등 |
| 수익계약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원활한 판매와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을 말함 "관계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 및 제12조 제3호 |

우선구매 절차



1단계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 시설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2단계 우선구매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익계약 등 구매 방법 결정
·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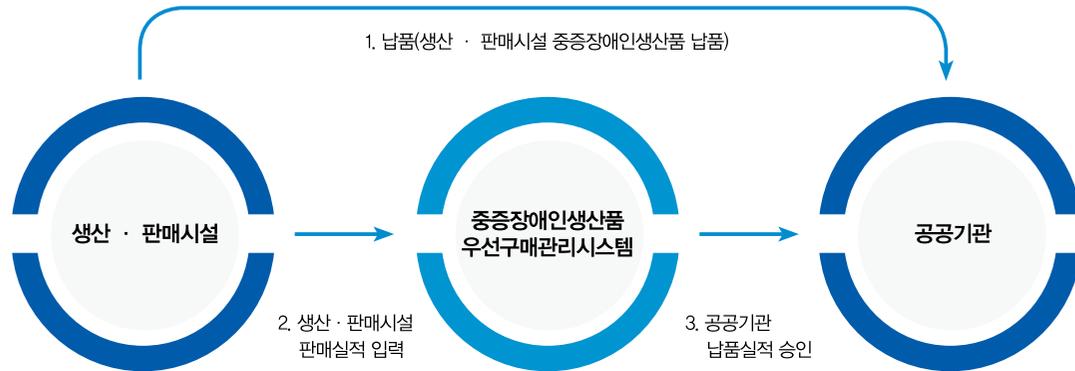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

구매촉진 의무 우선구매 실적 인정 절차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소개

-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한 정보 부족 및 효율적 관리(구매실적 집계 및 검증 등) 체계 부재로 인해 통합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 관련 업무부담 최소화 및 비효율성 제거 필요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실적 집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
- 법제화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물품 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전자 상거래 지원을 통한 중증장애인생산물품 판로 확대

우선구매 실적 제출 방법



구매계획

공공기관에서 직접입력

구매실적

- ① 생산·판매시설 납품
- ② 생산·판매시설 판매실적 입력
- ③ 공공기관 납품실적 승인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의2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물품 및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 수집·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수의계약 관련규정 현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1항 단서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 다.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
5.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수의 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업무 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생산물품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 나.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 계약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인으로 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 각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 제25조제1항7의2호 나목 :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계약법 및
기타 우선구매 관련 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 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구매 촉진 의무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조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 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 ① 공공기관의 장은~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 되어야 한다.

서울 판매시설 이용시 장점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서 명시한 장애인생산품 전문 판매시설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4항, 동법시행령 제10조5항)

-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전용 쇼핑몰과 전문 상담인력 및 배송인력을 운영하여 신속한 주문 및 배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문접수 후 2일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 등 실적관련 전담인원을 운영하여 단순한 실적 입력이 아닌 실적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우선구매 실적 자동입력 및 주기적 공지로 간편하게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우선구매특별법에 관련하여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한번에 구매하실 수 있어 서류작업의 간편함을 제공합니다.
 - 전문 마케팅 직원의 방문을 통하여 단가계약 등의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제품불만 등 클레임에 대하여 100%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 A/S 및 교환 요청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4.10> (양식)

제 서울양천-장애인-20000608-015 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 시설의 명칭: 서울특별시립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2.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3. 시설종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4. 이용정원: 0 명
 5. 운영법인명: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6. 시설의 장 성명: 이상익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서를 수리하였습니다.

2019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봉지일자 : 2000060808

서울 판매시설 이용가이드



에이블마켓 이용방법

이용방법

- 1666-1030 대표전화 이용
입자리육성 일이 없으면 살도 없다
- (상담이 많아 되도록 온라인 쇼핑몰 에이블마켓 이용권장)
- www.ablemarket.or.kr 접속 또는 포털사이트에 에이블마켓을 검색하여 접속 기관회원, 기업/시설/단체회원, 개인회원 중 해당하는 그룹으로 선택하여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 등록을 위해 가입 및 주문 시 기관 및 부서명, 담당자 정보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기!

- 결제수단
 - ① 온라인 카드 결제
 - ② 방문 카드 결제
 - ③ ARS 카드 결제(비대면)
 - ④ 나라빌(정부기관)
 - ⑤ 제로페이
 - ⑥ 무통장 입금(전자계산서 OR 현금영수증)

구매증빙서류 온라인 출력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주문 상세정보 페이지 하단의 원하는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서 발급되어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주문상품 견적서 바로 출력

- ① 본견적서
 - 주문 전 : 장바구니 → 하단 [견적서 출력] 버튼
 - 주문 후 : 마이페이지 → 주문배송조회 → 상세정보 페이지 하단 [견적서] 버튼
- ② 비교견적서(타 견적서)
 - 주문 전 : 주문 시 배송메모란에 기재하여 주문
 - 주문 후 : 고객센터(1666-1030)로 연락하여 요청
- ③ 기타 서류 추가 필요 시, 배송메모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 주세요.
- ④ 대량 구매 시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실적 증명 서비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납품 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 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 등록기한 : 매월 20일 전월 구매실적 등록

관계법령 안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지위와 수의계약

- 서울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 생산품의 판매대행 시설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이 동 시설로 부터 구매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특별법에서 정하는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구매 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방법 · 절차 및 계약금액 결정 등에 있어 예외적 규정이 적용됨.
- 예정가격 이하의 범위 안에서 협상을 통해 계약금액 결정(2천만원 이상 가능)
- 계약체결 시 직접생산 증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하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 로 대체 가능
- ※ 관계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안전행정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안내(보건복지부) 등
- 장애인복지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대행 등 지원시설
- 서울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수의계약 대행 등을 위해 서울시가 관리하는 시립시설(위 · 수탁 협약서 제2조)

장애인복지법

-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발취)
-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 · 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서울특별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관리운영 위 · 수탁 협약

- 제2조(위 · 수탁 사무) ① “시”가 “협회”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수의계약의 대행 (“협회”는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 · 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서 생산 하는 물품과 재가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판매에 노력하여야 한다.



에이블마켓



홈페이지



장애인생산물품 소개

주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사무용지류

복사용지 A4/A3/A5/B4/B5 외
75g/80g/85g



중질지 A4/A3/A5/B4/B5 외
70g



친환경용지
A4
75g/80g(건식2종/친환경)



컬러 복사용지(색지)
A4
70g(250매)



화장지 & 위생용품

롤화장지/점보롤/두루마리
500m/300m/70m/60m/50m/30m



핸드타올/사각티슈/냅킨
고급지/일반지/갈색지



물티슈
순면/캡형/엠보/휴대용 등



비누/세제
물비누/세안비누/세탁비누/주방세제/세탁세제 등



재생토너 카트리지

장애인생산품의 재생토너카트리지는 빈 케이스에 토너 및 브레이드, 기어 등 마모된 부품을 교체 후 토너를 재공급하여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거친 제품입니다.



잉크 · 토너 카트리지 주문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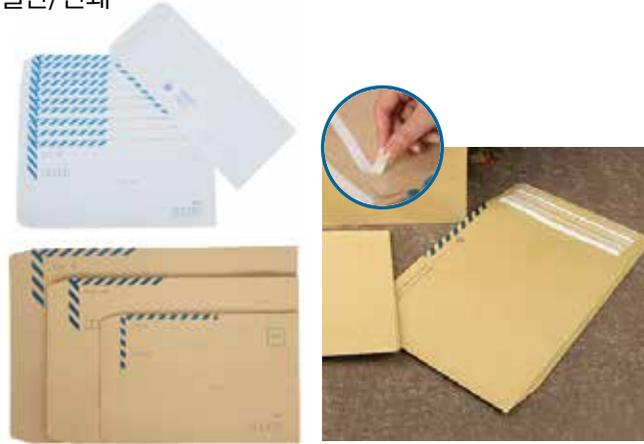
- 프린트기종
- 주문색상
- 주문상담 1666-1030 / 02-2647-4100



사무용 양식 & 소모품

* 모든 사무용품류에는
기관명 등 인쇄주문이
가능합니다.

봉투 행정/일반/인쇄



각종화일 정부/문서/클리어



기타 결재판/보존상자/표지



서비스 용역

청소용역/조경용역/스캔용역/세차용역
/택배용역/이사용역/DM서비스



전자정보장비

전자제품
조립PC/USB/멀티탭/선풍기



LED/카메라



화훼, 조경



꽃바구니, 꽃다발
전화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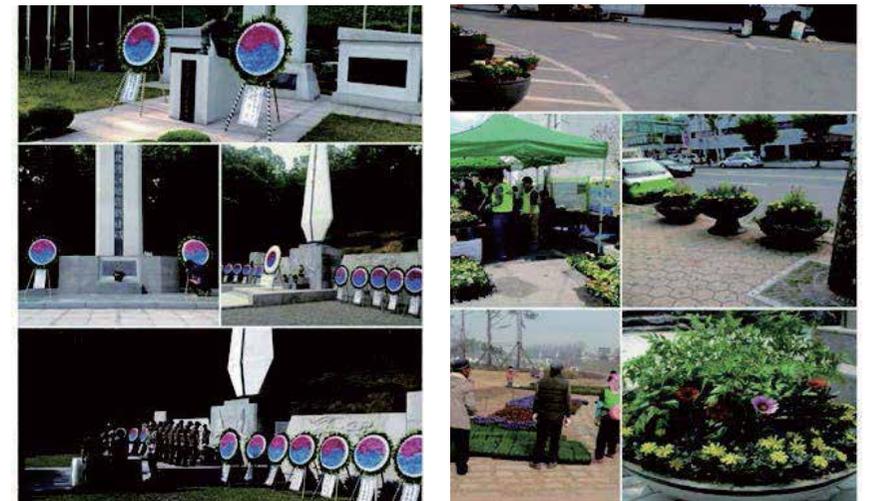
축하·근조 화환
전화문의



동양란, 서양란
전화문의



관엽식물, 분재
전화문의



가구, 벤티컬

가구



의자



커튼



우드블라인드



차선분리대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선택!

- 전국 최초,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증
- 최상품의 원료로 최고의 제품 생산
- 설치 후, 2년간 유지보수 AS

그린내 차선분리대

- 캡으로 마감처리된 깔끔한 외관 디자인
- 3M 초고휘도 반사지 부착
- 슬림형 지주베이스 설계 (세로160mm×가로220mm)
- 복원력이 강한 설계
- 고순도 열가소성 폴리우레탄(TPU) 재질 : 충격흡수율과 복원력 우수
-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 : 외부압력이나 충격에 강함
- 아사(ASA) 특수코팅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변색 방지
- 후렌지 스크류&갈브릭 Ø12×125mm
- 후렌지 볼트&너트 Ø8×45mm

전기차충전기

착공 전



착공 중



착공 후



휠체어리프트

이동식 무대용 휠체어리프트



- ✓ 좁은 공간이나 구조 때문에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곳
- ✓ 무대 내부 시설, 설비로 인해 설치형 승강기 공사가 어려운 곳
- ✓ 공사 및 설치 예산 확보가 어려운 곳 등에서

설치 공사 없이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장소로 이동하여 쓸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입니다.

유지보수계약 불필요
- 신속한 A/S (서비스센터 운영)



판촉 · 인쇄 & 주문제작 상품

* 사업명, 지급대상, 예산 3가지만 말씀해주시면 최고의 상품을 최저가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판촉물 답례품/기념품/홍보품



인쇄물

현수막/봉투/명함/각종서식/쇼핑백/점자인쇄 외



식료품

커피/차

원두커피/믹스커피/녹차 등



제과/제빵/떡

쿠키/도넛/케이크/견과 등



가공식품

농산가공품/수산가공품/축산가공품



지원키트



혹서기&혹한기대비 지원물품



어르신지원물품
(파스, 구급함, 찜질기, 건강기능식품 등)



아동지원물품
(연령대별 맞춤키트구성)



착한식당지원물품
(얇치마,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등)

기타

기타

미세먼지마스크/디퓨저/캔들/비닐봉투/마대 등



종이컵류



장갑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현황

| 시설명 | 전화번호 | 주소 | |
|--------------|--------------|-----------------------------------|-------------------------------------|
| 서울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2-2647-410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3 | |
| 부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1-852-0258 |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 중앙대로 979번길 29 | |
| 대구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3-984-1116 | 대구광역시 동구 해동로 204 | |
| 인천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32-464-0184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76번길 7 청라디오스텔 201호 | |
| 광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2-672-9765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55 | |
| 대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2-826-3233 | 대전광역시 유성구 은구비남로 7번길 15 | |
| 울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2-258-2494 | 울산광역시 북구 신답로32-1, 2층 | |
| 경기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본사 | 031-256-9844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누림센터 지하층 B03호 |
| | 남부센터 | 1800-6636 |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381번길16 |
| | 북부센터 | 031-851-1535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68번길 152(1층) |
| 강원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본사 | 033-262-4264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991 |
| | 강릉지점 | 033-644-2503 | 강원도 강릉시 유산로 25번길 22 |
| 충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3-238-4577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 |
| 충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1-881-7781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38 | |
| 전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3-856-2646 |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 14길 1 | |
| 전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1-278-2461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266번길 11 | |
| 경북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4-857-8890 | 경상북도 안동시 광명로 43 | |
| 경남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55-274-0888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함마대로 2568 | |
| 제주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64-702-1459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선사로 6길 91 | |
| 세종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044-864-2081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허만석1로 35 | |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서 모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직접 배송까지 가능 보건복지부에서는 가급적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통한 구매를 권장함

M · E · M · 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below the header. It is intended for the main body of the memo.